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10.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10. 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10. 8.
-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0.10.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조 용 순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환경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행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2) 환경위원회 기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설(안 제2조)
 - 가) 구 환경상 심사

- 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구성과 임기(안 제3조)
- 가) 환경위원회 구성 인원을 “25인”에서 “15명”으로 함
 - 나) 위원장을 “위촉직”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4급 이상”에서 “구 소속 5급 이상”으로 변경
 - 다) 임기 사항 중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 4) 분과위원회 폐지(제5조 삭제)
-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안 전반)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마포구 환경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포구 환경 행정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0 현행 환경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선출된 2명의 분과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25인 이내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2개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하였는 바, 현행 조례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인”도 위원 수가 축소되고, 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